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100분의 80이상, 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90이상 동의하되 당해 축사의 인접 세대에 대하여 우선 동의를 받은 경우. 단, 축사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지역 안으로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u></p>

군산시 의회 제1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1년 8월 1일

군산시 조례 제991호

##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20천원” 을 “50천원”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1. 참전명예수당 1인당 월 <u>20천원</u>                지급</p> <p>2. (생   략)</p>	<p>제4조(지원사업) -----            -----            -----.</p> <p>1. -----50천원                -----</p> <p>2. (현행과 같음)</p>

군산시 의회 제1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1년 8월 1일

군산시 조례 제992호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사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바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9. 6.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9. 6.23>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군산시 의회 제1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금강철새생태 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1년 8월 1일

군산시 조례 제993호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 설치한 철새생태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란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 교도대원 및 공익근무 요원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민간위탁”이란 일정기간 동안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민간위탁) 철새생태관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내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시설내에 설치된 회전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승인)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교육, 세미나, 학습등을 위하여 무료로 시설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물 관람과 학습 등을 하고자 입장하는 경우에 제7조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휴무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무한다.

제7조(입장료 및 입장권) ①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물, 전시품 또는 조망대를 관람·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입장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 발매기로 판매를 할 수 있다.

④ 자동발매기로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입장권 규격과 도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는 입장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및 감면) 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방하여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람시간 종료이후에 회전식당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입장자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제9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3월 1일~10월 31일) : 10시 00분 ~ 19시 00분
2. 동절기(11월 1일~다음해 2월말) : 10시 00분 ~ 18시 00분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세입관리)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날 근무일 이내에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관련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의 시장이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행위제한) ① 입장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난무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입장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등) ① 군산세계철새축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 종합추진계획의 수립
2.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 발굴·육성
3. 축제의 주최와 행사진행
4.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간 긴밀한 협조
5. 축제후 자체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 모색
6. 그 밖의 축제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조류, 환경관련 전문가
2. 축제와 관련 있는 지역주민
3. 축제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철새생태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산세계철새축제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시설 입장료(제7조제2항과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2,000	1,000	
청 소 년 · 군 인	1,000	700	
어 린 이	500	300	

## [별표 2]

## 시설 입장료(감면)(제8조제5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000	500	
청 소 년 · 군 인	500	300	
어 린 이	300	200	

군산시 의회 제1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1년 8월 1일

군산시 조례 제994호

###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를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으로, “30일”을 “60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본문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 보칙

제2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p> <p>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p> <p style="text-align: center;">보칙</p> <p>제2조(감면 <span style="float: right;">제외대상</span>)  ----- 「지  방세법」 제13조제5항 --  -----  -.</p>

군산시 의회 제1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1년 8월 1일

군산시 조례 제995호

##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인 발급기”를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로 하고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를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계기 및 무인발급기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무인발급기”를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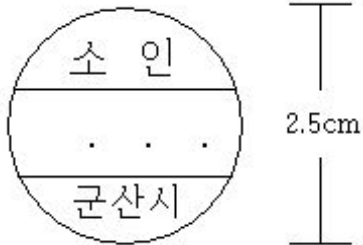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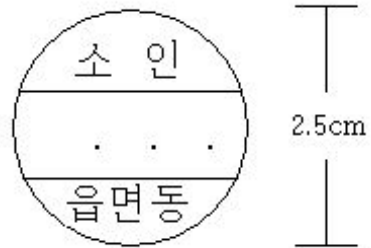
[별표 2]

소 인 인 규 격 (지 림 2.5cm) (제15조제2항 관련)

(시)



(읍·면·동)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	용) ①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 · 주	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기(이하 “무인발급기” 라 한다)	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무인발급기” 라 한다) · 주민등	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	템” 이라 한다)-----
수 있다.				-----
	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②무인발급기 · 주민시스템으로--		-----
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	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 되			-----
어야 한다.				-----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③-----		-----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	무인발급기 · 주민시스템의 관리		-----
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	책임자를 무인발급기 · 주민시스		-----
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	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		-----
한다.				-----
제14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수입금	의 정산) <조제목 개정 2001. 06.	제14조(계기 · 무인발급기 · 주민시		스템 수입금의 정산) .
15>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③계기 · 무인발급기 · 주민시스템		

현행	개정안
<p>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 ----- ----- ----- -----.</p>
<p>④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④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 ----- -----.</p>
<p>제15조(증지의 소인) ①증지를 수납한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즉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u>계기 및 무인발급기</u>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p>	<p>제15조(증지의 소인) ①----- ----- ----- ----- -----. ----- <u>계기·무인발급기</u> ----- ----- -----.</p>
<p>② (생략)</p>	<p>----- ----- ----- ----- -----. 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 의회 제1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1년 8월 1일

군산시 조례 제996호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14조”를 “제1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재정출연금) 군산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재정출연금) ----- ----- 제17조----- ----- ----- -----.

군산시 의회 제1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수산물 종합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1년 8월 1일

군산시 조례 제997호

##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물종합센터(이하 “수산물센터”이라 한다)”를 “군산시수산물종합 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수산물센터”를 “군산시수산물종합센터(이하 “수산물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비등”을 “경비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번영회,관련단체”를 “상인회, 관련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둔자로서”를 “둔 사람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로, “있는자로서”를 “있는 사람으로”로, “5인이상”을 “5명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자중 군산수산물종합센터”를 “대상자 중 수산물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전세금과 대부료”를 “「군산시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전세금과 대부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허가기간중”을 “사용허가 기간 중”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중 “사용료 라 한다)를 납 부하여야”를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겨우”를 “경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번영회”를 “상인회”로 한다.

제1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산물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한 <u>수산물종합센터(이하 “수산물센터” 이라 한다)</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군산시수산물종합센터</u>----- ----- -----.</p>
<p>제2조(위치) <u>수산물센터</u>는 군산시 해망동 1011-21, 금동 57-4, 57-5번지에 둔다.</p>	<p>제2조(위치) <u>군산시수산물종합센터(이하 “수산물센터” 라 한다)</u>----- -----.</p>
<p>제3조(투자방법) ① (생략)</p> <p>②영업홍보에 필요한 경비등 영업비용도 입주자가 부담한다.</p>	<p>제3조(투자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경비 등</u> -----.</p>
<p>제4조(운영관리) ①수산물센터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점자 단체인 <u>번영회, 관련단체</u>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p>	<p>제4조(운영관리) ①----- ----- ----- <u>상인회, 관련단체</u> ----- ----- -----.</p>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와 기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입점자격) ①수산물센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수산물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배우자, 자녀, 미혼인 경우 부모 포함)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市場) 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장(市場)에서 입점 희망업종과 동일 종류 업종으로 영업사실이 있는자로서 상가지역에서 소속된 시장의 대표를 포함한 5인이상 동종 업종의 상인이 영업사실을 확인한 경

②----- 따라 -----  
-----  
-----  
-----  
-----  
----- 그 밖의 -----  
-----  
-----  
-----.

제5조(입점자격) ①-----  
----- 사람은 -----  
-----  
둔 사람으로 -----  
-----  
각 호-----.

1. -----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  
-----  
----- 있는 사람으로 -----  
-----  
----- 5명이상 -----  
-----

우

2. 제1항제1호의 대상자중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순위결정시 동 순위자간 우선순위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장기 거주한 자로 결정한다. 일시적으로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우리시 전입 일까지로 계산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수산물센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전세금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시 시장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전세금과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세금을 납입한 자가 수산물센터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되어 납부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물센터의

-

2. ----- 대상자 중 수산물센터 -----  
-----  
-----  
-----.

②-----  
-----  
-----  
--- 사람으로 ----- . -----  
-----  
-----  
-----.

제6조(사용허가) ①-----  
----- 사람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전세금 등) ①-----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의한 전세금과 대부료-----  
-----.

②----- 사람이 -----  
-----  
-----  
-----  
-----.

대부·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 등 면할 행위가 있을 경우 체납 또는 면할된 사용료를 공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

③수산물센터 사용허가기간중의 전기, 전화, 상하수도 사용료 및 쓰레기 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 관리비는 입점자가 부담한다.

제7조의2(사용료) ①시장 사용자는 사용료 요율에 의하여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율은 건물 및 부지평가액의 30/1000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10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 ~ 4. (생략)
-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자체운영규정) 번영회 및 위탁을 받은 개인·단체는 수산물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

-----  
-----  
-----  
-----.

③----- 사용허가 기간 중  
-----  
-----  
-----  
-----.

제7조의2(사용료) ①-----  
-----  
-----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 -- 경우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허가취소)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상인회 --  
-----  
-----

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제13조(준용규정) 수산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규정)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군산시 의회 제1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1년 8월 1일

## 군산시 조례 제998호

###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군산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 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공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9. "분리대"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한다.

10. "공공자전거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 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제3조제1항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5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시민참여·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6. 자전거도로 설치시 도로의 연계·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고 체력향상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에 참여한다.

제7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선 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 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보험)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역, 시내·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자전거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5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종합터미널, 역, 시내·외 버스 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대형유통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기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은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은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를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자전거이용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교통의식의 고취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타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자전거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전거타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운전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기증·공공자전거·재생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번호판을 교부하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군산경찰서, 군산교육지원청)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정책계장

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24조제3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4. 사망·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 제1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1년 8월 1일

군산시 조례 제999호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 [ 별표 8 ]

##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제24조제2항 관련)

## 〈산정방법〉

$$L\text{당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L) \times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이익}$$

- (주) 1) 쓰레기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 가격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4) 판매수수료 요율은 10%를 기준으로 적용  $\langle(L\text{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L) \times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 \text{봉투제작비}) \times 0.1\rangle$  산정하여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5) 판매가격은 원단위에서 절상함
- 6) 공급가격은 산출가격에 판매가격의 원 단위 절상으로 인한 차액을 포함 결정

## 〈판매가격〉

(단위:원)

용량(L)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5	135	15	150	
10	225	25	250	
20	405	45	450	
30	630	70	700	
50	990	110	1,100	
100	1,980	220	2,200	

#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공고 제2011-1225호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 ①항 및 ⑨항을 준용하여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위원별 평가 전략과제수를 줄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해 위원 수를 증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 제13조(위원회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 3. 의견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21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전화 : 450-6106, FAX : 450-4333,  
전자우편 : lerele14@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심사평가계 (전화 450-61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군산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과성·능률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이를 추진하는 관·과·소의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시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년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외부평가"란 주요업무중 시장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시민만족도 조사"란 시장이 평가대상 관·과·소에 대한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역량, 업무추진 등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등을 자체조사 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 제 2 장 자체평가

제3조(자체 평가계획 시달)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관·과·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시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4.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관·과·소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요업무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 제5조(정기평가)

- ① 각 관·과·소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각 관·과·소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각 관·과·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심사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담당관은 각 관·과·소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시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정기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표 및 가중치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⑥ 감사담당관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관·과·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시평가) 시장은 정기평가 분기에 속하지 아니한 분기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외부평가) 시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민만족도 조사) 시장은 평가대상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관·과·소의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관·과·소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5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장 자체평가위원회 등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3조(위원회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장급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사평가계장이 된다.
- ⑤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자료제출)

-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과·소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관·과·소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1-1247호

# 공 고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일

## 군 산 시 장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2010년 11월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1038호(2010.11.24시행) 및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2011.1.3시행)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그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 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 2. 주요내용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 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함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전화063-450-4352, 팩스063-450-639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함봉석(전화:450-43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군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b>500</b> <b>미터</b>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7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 ----- ----- ----- ----- <b>1킬로미터</b>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1 - 1248호


##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신조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

## 군 산 시 장

1. 공인 신조사유 : 조직신설에 따른 공인신조
2. 공인등록 연월일 : 2011. 8. 1.
3. 등록공인 최초 사용일 : 2011. 8. .
4.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1점) : 전자이미지 포함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비고
군 산 시 국 제 협 력 과	군산시자치행정국국제협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11 - 1249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 1.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제76회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결정·공시합니다.

2011. 7. .

## 군 산 시 장

### 1. 이의신청 개요

가. 공시기준일 : 2011년 1월 1일

나. 개별 단위 면적 : m<sup>2</sup>

다. 개별필지별가격 : 원

라. 조정결정 필지수 : 33필지(내역붙임)

마. 공 고 사 항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 2. 개별공시지가 열람장소 : 시청(토지정보과)

3. 이의신청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 450-6082,6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 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내역

군산시

(단위: m<sup>2</sup>/원)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당초지가	조정지가	비고
1	군산시 해망동 1000-217	181,000	219,000	상향(특성오류)
2	군산시 해망동 1000-218	124,000	219,000	상향(특성오류)
3	군산시 금동 4-8	523,000	539,000	상향(특성오류)
4	군산시 금동 7-3	397,000	410,000	상향(특성오류)
5	군산시 금동 61-1	479,000	564,000	상향(저촉율)
6	군산시 명산동 13-17	306,000	191,000	하향(특성오류)
7	군산시 개복동 6-7	422,000	448,000	상향(특성오류)
8	군산시 개복동 6-14	174,000	180,000	상향(특성오류)
9	군산시 중동 273-86	146,000	180,000	상향(표준지오류)
10	군산시 조촌동 703-2	203,000	233,000	상향(특성오류)
11	군산시 구암동 120-9	33,000	91,200	상향(특성오류)
12	군산시 내흥동 329-14	57,200	68,100	상향(특성오류)
13	군산시 수송동 19-35	266,000	380,000	상향(특성오류)
14	군산시 수송동 20-30	266,000	380,000	상향(특성오류)
15	군산시 수송동 20-32	266,000	380,000	상향(특성오류)
16	군산시 미장동 64-9	203,000	275,000	상향(특성오류)
17	군산시 미장동 64-17	203,000	275,000	상향(특성오류)
18	군산시 미장동 64-19	203,000	275,000	상향(특성오류)
19	군산시 미장동 65-4	203,000	260,000	상향(특성오류)
20	군산시 미룡동 287-16	28,000	36,000	상향(표준지오류)
21	군산시 미룡동 287-17	28,000	36,000	상향(표준지오류)
22	군산시 소룡동 9-10	97,000	91,900	하향(특성오류)
23	군산시 소룡동 1652	107,000	104,000	하향(특성오류)
24	군산시 오식도동 664-6	281,000	242,000	하향(특성오류)
25	군산시 오식도동 875	177,000	175,000	하향(특성오류)
26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308-4	45,400	32,200	하향(특성오류)
27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152-2	18,600	19,200	상향(특성오류)
2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53-3	42,400	96,600	상향(표준지오류)
29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136-6	114,000	71,700	하향(표준지오류)
30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136-7	114,000	71,700	하향(표준지오류)
31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11-2	17,700	122,000	상향(표준지오류)
32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94	21,200	23,200	상향(표준지오류)
33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88-1	19,500	19,600	상향(특성오류)

# 2011년도 면허어업 처분 공고

제2011- 1250호

2011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면허어업 처분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

## 군 산 시 장

### □ 2011년도 면허어업 처분사항

어업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면허기간	어장위치	처분연월일	어업권자
해조류양식 (김)	부류망홍	제5594호	2011. 7. 29 2016. 7. 28	옥도면 선유도 해역	2011.7.29	선유도어촌계
”	”	제5595호	2011. 7. 29 2012. 7. 28	옥도면 비안도 해역	”	비안도어촌계

군산시 공고 제2011-1252호

## (군산시) 2011년 여행바우처 사업 공고(2차)

군산시에서는 국민의 국내관광 활동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상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1. 8. 1.

### 1. 신청자격 요건

- 《개별여행바우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 신청
-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로 참가자를 구성하여 신청
  - 문화바우처 수혜자 및 신청자는 제외

구 분	개별 여행바우처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여행형태	○개인 여행 ○가족동반 여행	○사회복지시설 단위 단체여행
신청자격 요 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구, 차상위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비 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2. 신청방법

- 여행바우처 웹사이트([www.tvoucher.kr](http://www.t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원칙)
  - ※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여야 함.
- 개별 여행바우처 방문(오프라인) 접수 신청방법 등은 ‘4. 공고 및

## 접수기간 내용 참조'

구 분	개별 여행바우처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4세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li> <li>-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 가구에서는 가구당 1명만 신청하여야 함.</li> <li>※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일괄 신청</li> <li>-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자, 인솔자 등으로 여행 참가자(보호자 등 포함하여 최대 40명까지 신청 가능)를 구성, 신청</li> <li>※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여행 진행·인솔을 위한 필요 최소 인원도 보호자로 구분하여 여행참가자로 신청 가능</li> </ul>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 내 여행바우처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li> <li>○ 가족동반 여행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동반 여부, 동반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가족여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 내 여행바우처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li> <li>- 단, 최근 1년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여행 참가자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li> </ul>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제출서류 없음 (전산망을 이용 신청자격 요건 검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 기획의도, 신청취지, 복지시설 특징, 여행 내 교육문화프로그램(최소 2시간 이상) 운영 내용, 구성원 특이사항, 보호자 필요성 등 여행바우처 웹사이트 해당 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청</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기관 현황 등 관련서류 파일 업로드 첨부</li> </ul>

※ 취약계층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여행인솔자 등 보호자 지원

- 복지시설단체 또는 지자체 기획 여행바우처 사업의 경우, 여행 참가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보호자(행사진행자, 의료진 등)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가 기초차상위 등이 아니어도 여행 참가자로 보아 필수 인원만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필요 최소 인원만 신청할 것)
- 최종 지원되는 보호자 인원을 선정기관(지자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신청할 경우 선정심사 시 감점 처리

### 3. 바우처 지원내용

- 개인여행가족동반여행 또는 복지시설단체여행 경비를 여행바우처(카드)를 통해 지원

-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전국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국내 여행상품을 여행바우처 카드로 구매·결제할 경우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 가족동반 여행으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이용가능 상품 예시

- 여행사에서 취급 판매하는 국내여행 결합(패키지) 상품 : 숙박을 포함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교통·숙박·기타 관광서비스(관광·식사·쇼핑 등) 등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상품
-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단일 상품 : 숙박(호텔, 콘도, 펜션 등), 철도·항공·선박 등 티켓 발권, 렌터카, 온천(스파)이용권, 에버랜드·아쿠아리움·놀이동산 등 각종 관광지 입장권·이용권 구매 가능

구분	개별 여행바우처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여행(1인당 15만원까지 지원)</li> <li>○ 가족동반 여행(동반가족수에 관계없이 20만원까지 지원)</li> <li>(예) 본인·가족 1명 동반: 20만원</li> <li>      본인·가족 2명 동반: 2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li> <li>예) 甲복지시설 선정(40명 인원, 1박2일 국내여행 40명*15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li> <li>      초과분은 복지시설 등 부담</li> <li>* 최대 한도액 내에서 실제 구매·결제 금액 기준으로 지원</li> </ul>
지원인원	15명	2~4개 단체 67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사의 국내 여행상품 구매시 지원</li> <li>-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행상품, 여행사 등의 상품 구매 가능</li> <li>- 오프라인 여행사 매장 또는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 구매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후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여행바우처 웹사이트 여행상품 견적관리 메뉴를 통해 여행사 대상으로 적합 상품 제안 및 견적을 요청</li> </ul>

####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1. 8. 1(월) ~ 2011. 8. 10(수) / 10일간
- 접수기간 : 2011. 8. 11(목) ~ 2011. 8. 22(월) / 12일간
  - 해당 접수기간에 신청한 자에 대해 유효한 신청으로 접수 처리
  - 선착순 신청 접수가 아니며,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등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 방문 접수장소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구분	지정 접수처 (행정기관명)	전화번호	지정 접수처 (행정기관명)	전화번호
군산시	옥구읍사무소(주민자치센터)	464-8544	신평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62-7305
	옥산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464-4301	중앙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46-7310
	회현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466-5151	홍남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46-7314
	임피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453-2006	조촌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52-7315
	서수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453-3301	경암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46-7316
	대야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451-3001	구암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46-7317
	개정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451-4058	개정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52-7318
	성산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453-0301	수송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62-7319
	나포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453-1301	나운1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62-7320
	옥도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442-0442	나운2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61-6630
	옥서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471-2001	나운3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68-9508
	해신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46-7301	소룡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62-7321
	월명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46-7309	미성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66-3001
	삼학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462-9306		

####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여행 바우처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되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가 원칙임.
- 《방문접수 신청》 접수기간 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지정 접수처 방문·신청서식 등 지정처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 직원을 통해 대리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1) ※ 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 서식은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5. 향후일정 안내

- 여행바우처 최종 선정결과 공지 : 2011. 8. 24(수) ~ 8. 26(금)
- 여행바우처 카드 발급 : 2011. 9월 말
- ※ 신청자가 기재한 주소로 개별 발급, 배송 예정
- 여행바우처 사용 기간 : 2011. 12. 31까지

## 6.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바우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선정 무효 및 향후 여행바우처 수혜자로 선정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바우처를 지원 받은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하며,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신청 서류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바우처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바우처 카드발급 등이 유선 안내되오며,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조치가 없음.
- 2) ※ 최종선정 결과는 여행바우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공지
- 여행상품 변경, 취소 등은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따라 처리되오며, 본인 사정에 의한 상품 취소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분은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음.
  - 여행 시 안전과 사고발생 시 보장 등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 3) ※ 복지시설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 기타 자세한 안내는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0-4554)지정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군산시 공고 제2011-1255호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1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개별주택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

- 기간 : 2011년 8월 3일 - 8월 23일
- 장소 : 군산시 세무과(과표계)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 2011년 1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대상임

### ○ 의견제출

- 기간 : 2011년 8월 3일 - 8월 23일
- 제출사항 :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대비 가격변동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군산시 세무과(과표담당)
- 제출방법 : 군산시 세무과(과표담당)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 450-4290,6155)로 문의바랍니다.

# 군 산 시 장